

대법원 2024도150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제빵 그룹의 회장, 총괄사장, 전무인 피고인들이 총수일가의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열회사 A, B가 보유하고 있던 계열회사 C의 주식을 다른 계열회사이자 유일한 상장회사인 D에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여 A, B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D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¹⁾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5083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지위(2012. 12. 기준)

- A ⇒ 그룹 계열회사들의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
- B ⇒ 그룹 계열회사
- C ⇒ 밀쌀 도정업과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그룹 계열회사
- D ⇒ 그룹 계열회사로 유일한 상장회사
- 피고인 1 ⇒ 그룹 회장, A의 최대주주, A와 B의 이사
- 피고인 2 ⇒ 그룹 총괄사장 겸 최고재무책임자, B, D의 대표이사
- 피고인 3 ⇒ 그룹 경영지원팀 전무, A의 재경지원실장(전무)

1) 이하 ‘특정경제범죄법’

나. 배경사실

- A, B, D 및 피고인의 아들들은 2008년 계열회사에 밀가루를 공급할 목적으로 밀가루 생산업체인 C를 67억 원에 인수
- 2011년말 기준으로 C에 대하여 A가 45.4%, B가 21.7%, D가 19.7%, 피고인 1의 아들들이 각 6.6%씩 지분 보유
- C는 2009년 하반기부터 2012년까지 계열회사 납품을 위해 대규모 차입 및 증자를 통한 공장 증축 및 생산설비 투자를 진행하여 매출액, 순자산 가치 등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²⁾상 특수관계법인과 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이 2013년부터 시행
- 2012. 6.경 회계법인 검토 결과 총수일가가 C 주식을 직·간접으로 보유하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을 합계 약 7억 3,600만 원으로 산출
- 회계법인이 2012. 6. 30. 기준으로 C의 주식가치를 주당 255원으로 평가

다. 공소사실의 요지

-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 피고인 1은 2012. 12. 당시 기준으로 C의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룹 지배구조와 계열회사 간 거래방식은 유지하면서 자신과 아들들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2. 12. 28.경 피고인 3에게 A, B, 아들들이 보유하고 있는 C 주식을 모두 주당 255원에 D에 양도시킬 것을 지시함
 - 피고인 2, 3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그룹 경영지원팀 등을 동원하여 A가 보유한 C 주식 9,077,000주를 취득 가액인 주당 3,038원, 유상증자 가액인 주당 1,000원 및 상증세법상 추정이익을 반영하여 산정한 적정가액인 주당 1,595원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인 주당 255원에 D에 모두 양도함

2) 이하 ‘상증세법’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A에 12,163,180,000원³⁾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D에 같은 액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
-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 피고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B가 보유한 C 주식 4,338,500주를 현저히 낮은 금액인 주당 255원에 D에 모두 양도함으로써,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B에 5,813,590,000원⁴⁾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D에 같은 액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

2. 소송경과

가. 제1심 ➡ 전부 무죄

나. 원심 ➡ 항소기각

- C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때 반드시 상증세법상 추정이익법을 적용하였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 C 주식의 가액 평가방법 결정에 피고인들의 부당한 지시·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주식 양도 과정에서 A, B, D 사이에 주식 가액에 대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A, B, D 내부의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들의 배임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움
- 공정거래위원회는 A, B에 대하여 D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를 이유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으나, 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됨[대법원 2024두35811 판결]
- 피고인들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주식 양도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3) $(1,595\text{원} \times 9,077,000\text{주}) - (255\text{원} \times 9,077,000\text{주})$

4) $(1,595\text{원} \times 4,338,500\text{주}) - (255\text{원} \times 4,338,500\text{주})$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 배임죄의 성립 여부(비상장주식 가액 산정의 적정성, 배임의 고의 등)

나. 판결 결과

- ▣ 검사 상고 모두 기각(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